익산 공고 제2014 - 1278호

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

『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』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14년 10월 15일

익 산 시 장

1. 낚시금지구역 지정 이유

○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당하저수지는 다양한 수생태계 동식물이 서식하고 생태적 보전 가치가 있어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변환경 훼손, 쓰레기 방치 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

○ 따라서 당하저수지에 대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생태친화적인 습지 조성 저해 요인을 차단하고자 함.

2. 낚시금지구역 명칭 및 위치

시설명	위 치	소 재 지	면 적	금지기간
당하저수지	익산시 용동면사무소앞	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813-1번지	39,092㎡	2014.10.15.~

3. 주요내용

○ 낚시금지기간 및 행위 제한

(1) 금지기간 : 년중

(2) 행위제한

- 낚시 행위 / - 어로 행위
- 그 밖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

4. 기타사항

○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

- 과태료 :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행위 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